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781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781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5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열

변론 종결2022. 5. 26.

판결 선고2022. 7. 7.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15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선로계통 및 전력수급계약 체결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원고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체결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가 착공예정일인 2020. 7. 20. 착공되거나, 준공예정일인 2020. 9. 19.까지 준공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해제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당진시청"을 "당진시장"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때문이라는" 다음에 "취지로"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이 사건 각 계약은"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나머지 계약금 268,015,000원(= D 177,650,000원 + E 90,36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2021. 7.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9. 20.자 각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서(을 제3호증, 이하 '최초 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9. 9. 24. F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9. 9. 23.부터 2020. 5. 31.까지, 보험가입금액 36,850,000원, 14,740,000원, 주계약금액 737,000,000원, 294,800,000원으로 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갑 제2호증의 1, 2)을 발급받았다.

다) 최초 계약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2.경 각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각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수정 계약서'라고 한다)를 최초 작성일인 2019. 9. 20.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수정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은데, 최초 계약서와 비교하면 '계약금-인허가 대관업무비' 란 각 금원(36,850,000원, 14,740,000원)은 변경되지 않았다.1)

라) 피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18.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9. 9. 23.부터 2020. 5. 31.까지, 주계약금액 869,000,000원, 425,810,000원으로 한 각 이행보증보험증권(갑 제3호증의 1, 2)을 다시 발급받았다.

마) 원고 측은 2019. 12.경 확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귀사와 저희 C(주) 사이에 당초 계약과 아울러 인상된 공사금액 내용으로 변경계약서를 2019.

12. 10. 작성하였습니다.

3. 저희 C(주)는 귀 사의 공사대금 대출에 대한 편의를 위해 변경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으나 이로 인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당사에 묻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가. 최초계약일자: 2019. 9. 20.

나. 변경계약일자: 2019. 12. 10.

다. 최초계약금액

- D 건설공사: 715,000,000원(부가세 포함)

- E 건설공사: 350,350,000원(부가세 포함)

라. 변경계약금액

- D 건설공사: 869,000,000원(부가세 포함)

- E 건설공사: 425,810,000원(부가세 포함)

바) 원고는 2020. 2.경 피고에게 협조공문(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주)(이하: C)는 계약전 A에게 단계별로 공사대금을 받아가기 위해 은행대출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A은 그와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기로 하였다.

2. A 주거래 은행에서 서류 접수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기성식으로 지급되지 않을 시는 C에서 다른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만약 위 방법이 불가할 때 A은 단계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C에 있으므로 대출이 해결될 때까지 A에 청구할 수 없다.

4. 사용허가 취득후 30일 안에 대출 관련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D, E는 자동 계약 파기되며 기 지급된 계약금은 즉시 (주)A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 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용도로 제출하기 위하여 인허가 대관업무비를 제외하고는 그 액수가 증액되는 형태로 다시 작성된 점, 피고는 수정 계약서에 따라 주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발급받은 점,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1,59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최초 계약서나 수정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당진시장의 발전사업허가일인 2020. 4. 22.부터 원고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해제통보 수령일인 2020. 7.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최초 계약서나 수정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최초 계약서나 수정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인허가 대관업무비) 51,59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의 주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초 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된 계약금(인허가 대관업무비 제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예정한 1차 중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가 최초 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된 계약금(인허가 대관업무비 제외) 268,0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1) 원고가 2020. 2.경 피고에게 발송한 협조공문(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에도 위 계약금(인허가 대관업무비)과 동일한 금액(36,850,000원, 14,74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